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예지·김성원

구자근 • 김석기 • 김위상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김상훈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,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,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, 복지,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 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, 정보격차해 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	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	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	
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	
부를 부담할 수 있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
	<u>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</u>
	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
	<u> 농어업인등</u>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